

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의안번호	
의결 연월일	

제안연월일 : 2011년 3월 3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
개정이유

- 의정자문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 부여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의정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함 (안 제4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, 임기종료일은 6월 30일로 한다.

② 자문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 경과자에 대한 조치) 이 조례 시행 후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위촉된 자문위원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임기) <u>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임기) ① <u>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, 임기종료일은 6월 30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자문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